

[별표 2]<개정 1996.5.9>

특산물품질인증표지(제35조제1항 관련)

1. 표지도표

[그림 생략]

2. 작도법

가. 도형

도형의 가로 길이(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) W 를 기준으로 모든 획의 폭은 $10/100 \times W$ 로 한다.

내부도형(네모형)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$20/100 \times W$ 로 한다.

각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한다.

나. 문자

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의 양쪽 끝의 수직선에 일치하도록 균형있게 배열한다.

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.

다. 색깔

"도형" 및 "품질인증"의 문자색은 금적색(배색비율 M100, Y100)으로 한다.

바탕색과 기타 문자등의 색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.

라. 기타 사항

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에 의한 생산조건등을 추가하거나 표지도표의 형태를 타원형으로 할 수 있다.